

의안번호	제 호
의결연월일	2019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·장난감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19. 10. 7.

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·장난감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19. 10. 7.

제 출 자: 고성군수

1. 제안이유

-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과 가족·공동체 육아 기능을 보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육아나눔터·장난감도서관 위탁 운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위탁근거

-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(공동육아나눔터)
- 건강가정지원법 제22조(자녀양육지원의 강화)
-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
-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의 2(민간위탁사무의 내용)

3. 위탁내용

- 위탁 대상: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·장난감도서관
- 위탁 기간: 2020. 1. 1. ~ 2024.12.31.(5년)
- 선정 방법: 공개모집공고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정
- 신청 자격: 신청일 현재 주사무소가 고성군에 소재를 둔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법인(학교) 및 단체
 -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,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

-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-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
-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의한 공익법인
- 비영리법인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,다문화 가족지원관련 비영리 단체

※ 공고 2회까지 고성군 소재 법인의 신청 및 수탁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3회차 부터 신청자격을 경상남도로 확대함

○ 위탁사무: 공동육아나눔터·장난감도서관 운영

4. 추진일정

- 민간위탁 공고 및 접수 : 2019. 10.
-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 : 2019. 11.
- 수탁기관선정 : 2019. 11.
- 협약체결 : 2019. 11.
- 위·수탁 기관 인수인계 및 기타 제반준비 : 2019.11.~12.
- 위탁운영 : 2020. 1.

- 붙임 1. 추진계획 1부.
2. 관련법령 1부.

붙임1)

-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·장난감도서관- 위탁운영 추진 계획

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과 가족·공동체 육아기능을 보완 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중심의 공동육아나눔터·장난감도서관 운영하고자 함.

I | 위탁 개요

□ 위탁근거

-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(공동육아나눔터)
- 건강가정지원법 제22조(자녀양육지원의 강화)
- 저출산·고령화사회기본법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
-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의 2(민간위탁사무의 내용)

□ 추진방침

-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투명성 확보
- 공동육아나눔터·장난감도서관 운영에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능력 고려
- 공개경쟁 민간위탁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·결정

□ 시설개요

- 시설명: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·장난감도서관
- 위치: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56번길 36(고성읍 동외리 230-2)
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4층
- 공간구성

공간구성	면적(446.9㎡)	공간내용	비고
공동육아나눔터	66㎡	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 공유 등 열린 공동체 공간	
장난감도서관	321.29㎡	영유아의 개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주제별, 영역별, 장난감 대여	
수유실	17.76㎡	수유실 및 기저귀 교환실	
화장실	41.85㎡	유아 및 부모화장실	

- 소요예산: 97,440천원
 - 공동육아나눔터: 42,440천원(2019년 국도비 내시 기준-인건비, 운영비 등)
 - 장난감도서관: 55,000천원(군비 100%- 인건비, 운영비 등)

II 위탁운영 추진 계획

□ 추진개요

- 위탁대상: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·장난감도서관
- 위탁기간: 2020.1.1.~2024.12.31.(5년)
- 위탁방법: 공개모집 공고 후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 결정
- 신청자격: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, 단체
 - 신청일 현재 법인 주사무소가 경남 고성군에 소재
 - 공고2회 까지 고성군 소재 법인의 신청 및 수탁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3회차부터 신청자격을 경상남도로 확대함
- 신청제외자
 -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 및 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
 - 법인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시 공신력,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았거나 민·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인 법인
 -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실체가 없는 법인 등
- 위탁사무: 공동육아나눔터·장난감도서관 운영
- 위탁운영 조건
 - 위탁범위: 공동육아나눔터·장난감도서관 운영
 - 사 업 비: 97,440천원 정도(사업비의 보조는 국·도·군비 지원 기준으로 변동 가능함)
보조금 외 운영비 및 위탁기간 중 추가되는 인건비는 수탁자 부담
 - 수탁기관은 아이돌봄지원법, 건강가정지원법, 저출산·고령화사회기본법,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지침, 위·수탁계약서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
 - 수탁기관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,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
 -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서에 의함
- 구비서류
 - 신청서
 - 법인정관
 - 법인 설립 등기부 등본(사회복지법인 설립 인가증 사본 첨부)
 - 임원 위탁운영 승인서 및 회의록

- 재산에 관한 서류(기본재산목록, 금융기관, 공공기관 증명서)
- 사업계획서(사업개요 및 사업내용, 세입·세출예산서)
- 사회복지사업 실적 및 이와 유사한 사업실적 자료
- 대표자 사용 인감계
-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등

○ 추진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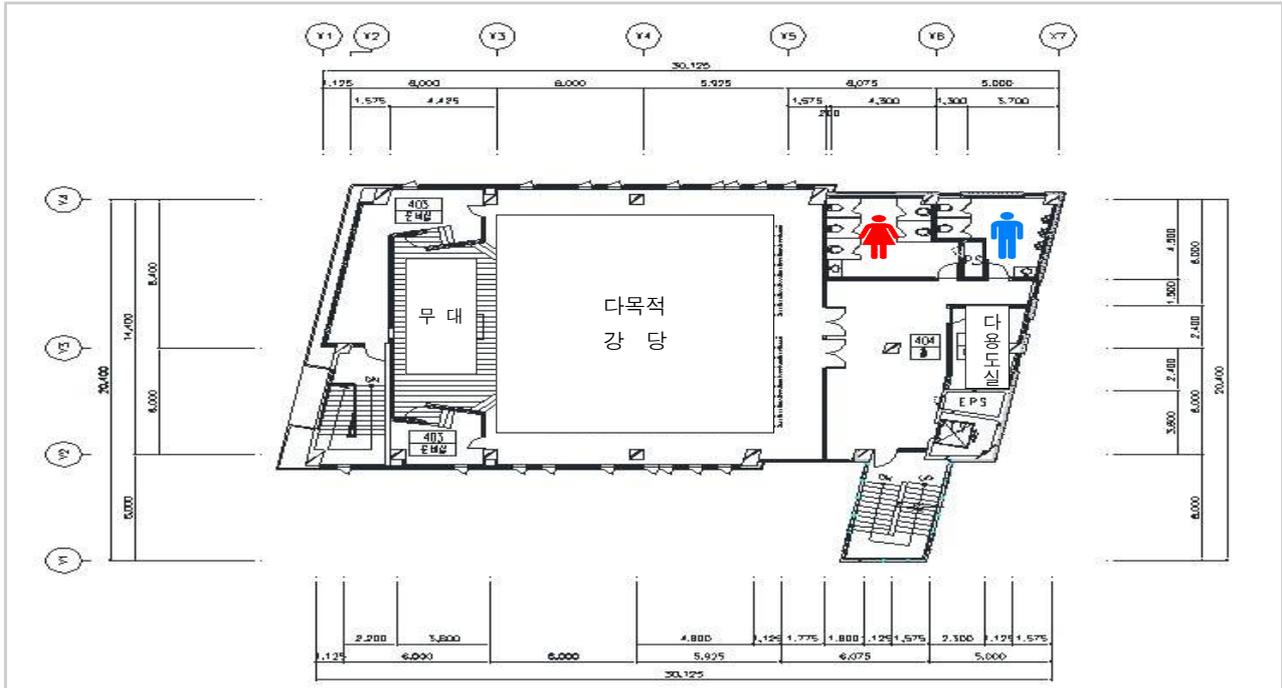
사업영역	기본기본사업	비고
2019. 10.	민간위탁동의안 제출 및 의결	
2019. 10.	민간위탁 공고 및 접수	
2019. 11.	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/수탁기관 선정 및 결과 통보	
2019. 11.	위·수탁 협약체결	
2019.11.~12.	위·수탁 기관 인수인계 및 기타 제반준비	

※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참고 종합사회복지관 평면도 및 사진

(평 면 도)

○ 4층 446.90㎡ (135평)



○ (현) 사진



붙임2

관계 법령

□ 아이돌봄지원법

제19조(공동육아나눔터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, 부모 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□ 건강가정기본법

제22조(자녀양육지원의 강화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, 방과후 서비스,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9. 15.>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(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9. 15.>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11. 9. 15.>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·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9. 15.>

□ 저출산·고령화사회기본법

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·지원하여야 한다.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

제4조의2(민간위탁사무의 내용)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 등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2. 교육·도서관·체육·공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3. 보건·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4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 및 관련사무
5. 자활·근로자복지·취업·창업지원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사무
6. 교통·주차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련사무
7. 청소·경비·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
8.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9.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